

審 查 報 告 書

1. 審查經過

가. 提出日字 : 1998. 12. 17

나. 提出者 : 이철수의원의 12인

다. 回附日字 : 1998. 12. 18

라. 上程日字 : 1998. 12. 21

2. 提案說明要指(提案說明: 李喆洙 議員)

가. 提案理由

-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「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을 경우 그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」 라고 규정되어 있음.
- 따라서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신청인으로부터 입찰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입찰 참가신청과 수의계약신청 및 견적서 제출자로부터 각각(건당) 10,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서
「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」고 규정하고 있고,
- 동법 제15조에는
「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」고 규정되어 있으며,
- 본 개정조례안에서 건당 10,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부분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「사용료·수수료 또한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」는 위임 규정이 있음.
- '97. 10. 14대법원의 판결내용도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」고 보고 있음.
-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의 법적 검토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의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을 전제로한 계약신청 및 견적서 제출시 징수토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조례 해석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: 생략

5. 討 論 : 없었음.

6. 少數意見 : 없었음

7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33호
의결년월일	1998.12.24 (제26회)

서산시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

발 의 자	이철수 의원의외 12인
발의년월일	1998. 12. 7

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8. 12. 7

발 의 자 : 이철수의원외12인

1. 제안이유

- 가.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「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」 라고 규정되어 있음.
- 나. 따라서 각종 입찰 참가자로부터 참가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나 수의계약의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의 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무는 지방자치 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사무로 볼수 있는바,
- 다.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신청인으로부터 입찰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입찰참가신청 과 수의계약신청 및 견적서 제출자로부터 각각 (건당) 10,000원의 수수료를 징수 하도록 함 <제5조>

3. 참고사항

- 가. 대법원 판결내역 1부
- 나. 관계법령 1부
- 다. 입찰소요경비 산출근거 1부
- 라. 법제처발행 「자치입법 실무강의 제3집」 내용발췌

조례 제 호

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중 “등록.지정.확인” 다음에 “입찰참가신청,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”을 삽입한다.

제5조(징수방법)중 “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” 다음에 “입찰참가신청서,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”를 삽입한다.

【별표 1】 중 제증명수수료요율표의 구분란(인가.허가.신고.등록.지정. 확인등)의 “1.일반행정관계” 다음 “2. 회계관계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“제2호 내지 제8호”를 “제3호 내지 제9호”로 한다.

구분	기준	수수료액	비고
(인가.허가.신고.등록.지정.확인등)			
2. 회계관계			
① 입찰 참가신청	1건	10,000원	
②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(1,000만원 이상)	1건	10,000원	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.허가 기타신고.신청의 수리 및 <u>등록.지정.확인등</u>(이하“제증명등”이라한다)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징수방법) 수수료는 서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붙이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제증명등의 구술신청서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【별표 1】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등록.지정.확인.입찰참가신청.수익계약신청 또는 견적등</u>(-----) ----- -----</p> <p>제5조(징수방법)----- ----- <u>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.입찰참가신청서.수익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등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【별표 1】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기 준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수수료액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인가.허가.신고.등록.지정.확인등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. 일반행정관계 ①~⑥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. 산림관계 ∫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8. 전기통신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 준	수수료액	비 고	(인가.허가.신고.등록.지정.확인등)				1. 일반행정관계 ①~⑥				2. 산림관계 ∫				8. 전기통신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기 준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수수료액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인가.허가.신고.등록.지정.확인등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. 일반행정관계(현행과같음) ①~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 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. 회계관계 ①입찰참가신청 ②수익계약신청 또는 견적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 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. 산림관계 ∫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9. 전기통신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 준	수수료액	비 고	(인가.허가.신고.등록.지정.확인등)				1. 일반행정관계(현행과같음) ①~⑥	1 건	10,000원		2. 회계관계 ①입찰참가신청 ②수익계약신청 또는 견적서	1 건	10,000원		3. 산림관계 ∫				9. 전기통신			
구 분	기 준	수수료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인가.허가.신고.등록.지정.확인등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일반행정관계 ①~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산림관계 ∫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. 전기통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기 준	수수료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인가.허가.신고.등록.지정.확인등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일반행정관계(현행과같음) ①~⑥	1 건	1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회계관계 ①입찰참가신청 ②수익계약신청 또는 견적서	1 건	1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산림관계 ∫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. 전기통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